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가. 제 안 자: 송명화 의원 대표발의(외 16명)

나. 의안번호: 제540호

다. 제안일자: 2019. 3.29

라. 회부일자: 2019. 4.03

2. 제안 사유

가.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폐지, 보다 탄력적인 남북협력분야 논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.

3. 주요 내용

가. 한강시민위원회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원(수) 삭제, 3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제2항)

나. 그 외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이밖에,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.

나. 검토의견

■ 한강시민위원회 정원 규정 폐지(안 제22조 제2항)

○ 한강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[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] 수립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시장방침[1]에 따라 2012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, 2013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인 제22조와 제23조를 신설하였음.

○ 또한, 위원회는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4기가 운영 중인데, 위원장 2명,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한 총 36명으로 생태환경, 남북협력·역사문화, 도시경관, 시민이용 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2018년 12월에는 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가 신설, 추가됨에 따라 기존 역사문화위원회는 남북협력·역사문화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, 해당 분과위원회 인원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었음.

---

1) 시장방침 제72호(2012.3.16.)

<표 1> 한강시민위원회 1~4기 운영 현황

한강시민위원회		1기	2기	3기	4기
인원(명)	전체	30	31	36	36
	위원장	2	2	2	2
	부위원장	4	4	4	4
분과 구성 (당연직 제외)		생태환경(6)	생태환경(7)	생태환경(8)	생태환경(7)
		역사문화분과(6)	역사문화분과(6)	역사문화분과(7)	남북협력역사문화(9)
		도시경관(6)	도시경관(6)	도시경관(7)	도시경관(6)
		시민이용(6)	시민이용(7)	시민이용(8)	시민이용(7)
임기		'12.3.16 ~ '14.3.15	'14.3.16 ~'16.3.15	'16.3.16 ~ '18.3.15	'18.3.16 ~ 20.3.15

○ **2019년도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예산액은 전체 1억 4천4백만원이며, 이 중 남북협력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원이 편성되어있는 등, 향후에도 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의 운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**

○ **현행 조례에 따르면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위원장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 개정안은 향후 분과위원회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부위원장의 수도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**

○ **또한, 현재 위원회는 총 36명으로, 현행 조례 제22조 제2항의 위원회 정원 규모인 30명 내외 규정을 40명 이내로 수정 보완하여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**

<표 2>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 ③ ~ ⑥ (생 략)	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 위원장 및 부위원장------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	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

① 시장은 한강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1. 한강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, 비전,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에 대한 사항
2.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·이용에 대한 사항
3. 한강 복원 및 이용 추진상황 점검
4. 제16조에 의한 단체와 협력방안
5. 기타 한강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행정2부시장, 한강사업본부장과 규칙에서 정하는 실·국장
2. 위촉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원환경·생태·자연성 회복·수상·도시계획·경관·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

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규칙에 따로 정한다.

제23조(위원회 운영)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,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1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당해 위원회의 경우, 당해 위원회(분과위원회, 소위원회 포함)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.

⑤ 회의(분과위원회, 소위원회 포함)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,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,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